

#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 (안)

의안 번호	94-54
----------	-------

제출년월일 : '94. 12. .

제 출 자 : 달서구청장(세무과)

## 1. 제안사유

현행 대구직할시달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대한 14개 조례중 12개 조례가 1994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2개조례는 시한연장에 제외하고 사회복지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등 정책복식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개별조례에 대하여는 적용 시한 연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고 적용시한을 1995년1월1일부터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코자 함.

##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 3. 주요골자

가.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12개 개별 조례를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 하나로 통합 제정함.

### 나. 통합조례내역

(1)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가)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2조 제1, 2항"

나)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3조"

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4조”

라)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등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5조”

(2)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6조”

나)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7조”

다) 대구직할시달서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8조”

(3)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9조”

나)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10조”

(4)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12조”

나)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13조”

다)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제14조”

다. 폐지조례내역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나)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라. 신설조례내역 :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11조”

6 (第31回 - 内務 第5次 條例案審査)

마. 기존조례 통합 및 폐지조례 요약

현행조례	대체조문	감면대상	감면세목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에대한감면	제 2 조	자활용사촌거주유공자가자활촌내에 소유하는토지및건물과2,000cc이하 보철용자동차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면제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감면	제 3 조	국가유공자단체가소유하는부동산	재산·종합토지세면제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 대한감면	제 4 조	음성나환자가음성나환자집단촌내에 소유하는부동산	재산·종합토지세면제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감면	제 5 조	종교단체가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 건축물및부속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50%감면
사회교육시설에대한감면	제 6 조	사회교육시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재산·종합토지세면제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 감면	제 7 조	실험실습용항공기, 선박	재산세면제
지정문화재에대한감면	제 8 조	지정문화재	재산세 1.5/1000세율 적용 종합토지세 50%감면
향교재산에대한감면	시한만료	폐 지	달서구내91.12.31이전 취득한향교재산없음
주차장에대한감면	제 9 조	노외주차장중주차용건축물(주차 시설부분)과주차용토지, 수입금액 기준7% → 3%하향조정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면제
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감면	제10조	매매용중고자동차	면허세면제
신설	제 11 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직접사용하는 토지	종합토지세50%감면
임대주택에대한감면	제 12 조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가임대 주택용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재산세50%감면 종토세3/1000세율적용
사권제한토지에대한감면	제 13 조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	종합토지세50%감면
지방공사등에대한감면	제 14 조	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및공단의 부동산 공사종업원의급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 사업 소세(종업원할)면제
새마을사업에대한감면	시한만료	폐지	농촌새마을사업관련 달서구면제대상없음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 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 일과세에관한조례외13건	부칙3조	폐지	기존감면조례의시한만료 및조문재구성으로 폐지함.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

대구직할시 달서구

# 차 례

제 1 장 총 칙 .....	105
제 1 조 목 적 .....	105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105
제 2 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105
제 3 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	105
제 4 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	105
제 5 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105
제 3 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106
제 6 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106
제 7 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	106
제 8 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106
제 4 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	107
제 9 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	107
제 10 조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	108
제 11 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108
제 5 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	108
제 12 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108
제 13 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	109
제 14 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	109
제 6 장 보 칙 .....	109
제 15 조 감면신청등 .....	109
제 16 조 시행규칙 .....	109

#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에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부동산과 축사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

법인에 한한다)가 인구 100만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하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대구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직할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대구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

#### 제 4 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0조(매매용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 5 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점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 전용면적에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제 6 장 보 칙

제15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대상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대구직할시달서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6. 대구직할시달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7.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8.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9.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0.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1.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2.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
13.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4.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별표 1 ]

### 상 이 등 급 분 류 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 급 (복합 호수자)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